집행기준 46-0-1 —— 분할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,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 갑 법인 병 법인 ＋ 정 법인 ＋ 단순분할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신설법인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분할법인 분할법인 분할법인 • 분할의 종류 병 법인 병 법인 A 법인 을 사업 A 법인 을 사업 A 법인 갑 사업 갑 사업 갑 사업 을 사업 \*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｢분할신설법인 등｣ 이라 한다. \*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｢분할법인 등｣ 이라 한다. • 분할의 유형 1. 인적분할：분할대가를 분할법인(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)의 주주가 교부받는 경우의 분할 2. 물적분할：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이 전부 교부받는 분할